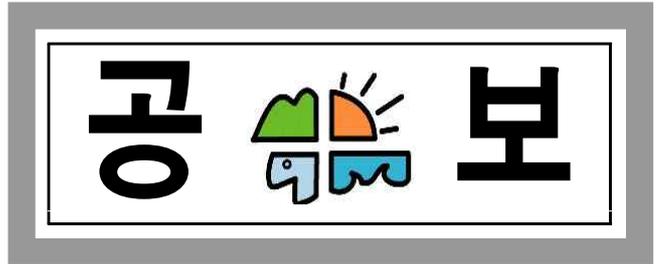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07호 2012년 6월 25일(월)

## 공 고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우대를 통해 출산률 증가에 기여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4조)

1) 건강검진비·출산준비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출산예정일,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로서 한다.

2)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두 번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나. 지원액(안 제5조)

1) 건강검진비 10만원, 출산준비금 10만원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함.

2)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의 경우 1년간 매달 10만원, 셋째이후 자녀는 3년간 월 10만원 지급하도록 함.

**다.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6조)**

- 1)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시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 확인 될 시 지원중단 또는 지원기간 변경하도록 함
- 2) 지원대상이 아닌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도록 함.

**라. 다자녀가정의 지원(안 제7조)**

- 1) 임신부 이동 편의를 위해 임신부 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예고기간 : 2012. 6. 25 ~ 2012. 7. 16(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위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2년 7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우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033-639-2442 FAX 033-639-27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자녀를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
5. “건강검진비”란 임신중인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해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출산준비금”이란 임산부의 출산 준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7.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8. “출산가정”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아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보호자(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9. “입양아”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민은 저출산의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지원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는 소속직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공동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로 한다.

② 출산준비금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로 한다.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를 둔 출산가정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④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하여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아버지가 시에 주소를 두고, 어머니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임신부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제5조(지원액)** 건강검진비·출산준비금·출산장려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검진비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이상을 임신 시에도 같다.
2. 출산준비금은 임신 6개월부터 또는 조기 분만 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한다.
3. 출산장려금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둘째아는 매월 10만원을 출생일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매월 10만원을 출생일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산순위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자녀로서 출생순위에 따른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출산순위의 변동이 확인되는 달부터 출산지원금 지원을 중단 또는 지원기간을 변경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제7조(출산장려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게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임신부 편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제9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연도별 출생아 현황, 모유 수유율 등 기초 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모자보건사업 계획 등에 활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출산장려 지원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출산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례에 맞게 시행절차를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절차(안 제2조)

- 1)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고 동장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2) 동장은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출산지원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15일까지 지급함.

나. 신청기한(안 제3조)

- 1)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은 임신 6개월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
- 2)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3) 출산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예고 기간 : 2012. 6. 25 ~ 2012. 7. 18 (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위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2년 7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여성정책담당)에게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우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 033-639-2442 FAX 033-639-27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①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의거 출산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에 의해서만 지원한다. 다만 신청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출산지원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기한)** ①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비·출산준비금 : 임신 6개월부터 출산 전까지
2. 출산장려금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② 건강검진비 또는 출산준비금의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모자보건증진사업)** 조례 제9조의 모자보건증진사업은 속초시보건소장이 시행한다.

**제5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 대장(별지 제4호서식), 시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연 단위로 출력하여 보관한다.

**제6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동장은 당월 출생신고 및 출산지원금 신청

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자 변동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산준비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임부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최종월경일		분만예정일	
분만예정 의료기관		현 재 임신주수 (       개월)	
자녀수	의 자녀 중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전화번호	자 택		HP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①항에 의거 출산준비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의료기관 임신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 【 증명원대조확인처리인 】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거주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민원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 출산지원금 신청대장

연번	보호자 (부 또는 모)					신생아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기간	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년 월				

※ 임신부 건강검진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종별로 구분 작성

## 출산지원금 지원대장

연 번	보 호 자 (부 또는 모)					신 생 아		신청일	지급일	입금 계좌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거주기간	직 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년 월						

※ 임신부 건강검진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종별로 구분 작성

## 출생신고 및 출산지원금 신청현황

(단위 : 건)

구 분	출 생 신 고			출산장려금 신 청	출산준비금 신 청	건강검진비 신 청	비 고
	계	지원대상	미지원대상				
월 계							
누 계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연번	임산부·보호자 (부또는모)			영아또는 자녀		변동 사유	변동 일시	비고
	주 소	성 명	관 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변동사유란은 부모는모 ,영아,자녀의 전출·사망등으로 기재하되,전출시는 전출지역 명시